

제351회 국회 (임시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6월27일(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법률안 발의 및 예산·행정관련 개선의견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법률안 발의 및 예산·행정관련 개선의견 채택의 건 1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동영 성원이 됐기 때문에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7차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사임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가 작년 7월 6일 본회의 의결로 구성돼서 1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오는 6월 30일 자로 그 활동을 종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섯 차례의 전체회의와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 시찰, 전문가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했고 일본 내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체 및 정부기관 등을 방문하는 등 열정적이고 성과 있는 활동들을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출범한 현 정부가 정책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정책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도 이에 대응해서 선도적인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 보고자 사전에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4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연장 요구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런 우리의 적극적인 연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특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포함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7건의 법률 개정 및 제정사항과 33건의 예산 및 행정 관련 개선사항에 대해 심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안건을 먼저 상정하고 이어서 최운열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들은 뒤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 주시면 정리를 하고 채택이 필요한 사항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법률안 발의 및 예산·행정관련 개선의견 채택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 발의 및 예산·행정관련 개선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운열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최운열 제도개선소위원회 최운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소위원회가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법률안 등 검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세 차례의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27건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과제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합의된 과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스톡옵션 행사 가액 요건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지원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조세특례를 과도하게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용카드를 이용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결제 범위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제 범위 확대 시 불법 현금 유통 등의 우려도 있으므로 향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넷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하여는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 모집인 일사전속주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일사전속주의 폐지할 경우 카드업자 간 과열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핀테크 업체가 겪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단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일곱째,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사기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관련 범죄 혐의

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덟째, 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아홉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에도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동일하게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째, 민간조사업의 양성화를 위하여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한째,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적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진흥법에 도시민박업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대상에 내국인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유망 산업의 발전 상황에 맞추어 개별 규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등 규제 완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29건의 예산·행정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영 소위원장님, 잠깐 거기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운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윤종오 위원 1번 부분의 조세특례 제한을, 이

렇게 배제하는 경우에 일단 금액도 10억으로 상향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특례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추정하셨는지요.

○최운열 위원 그것은 오세정 위원님이 잘 아시나요, 그 부분?

○오세정 위원 지난번에 기획재정부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현재도 이걸로 혜택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정부 부담은 거의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십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전체 금액이 그것밖에 안 돼요?

○오세정 위원 예, 지금 별로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영 백승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승주 위원 제가 이전 회의에서 한 번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 자영업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를 같이 적용할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외국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임금 차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어떤, 국내 기업환경 측면에서 검토할 요소가 없는지, 우리가 대법원 판례로서 이걸 같이 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최운열 위원 그 말씀은 여기 12개 법안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 수석전문위원 그쪽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시지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예.

○이만희 위원 먼저 이 법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의사진행발언에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위원들께서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를 아주 내실 있게 우리가 운영을 했고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안들을 또 이렇게 제의를 하고 한 사항, 여기 내용을 추려 보면 여러 민간 분야에서 우리가 법과 제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 가지고 이걸 개선시켜 나가는 데 사

실은 중점이 주어져 있고, 사회적 환경이나 변화에 따른 미래일자리가 어떤 분야에 또 새롭게 분야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위원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일자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좀 아쉬운 점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일자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여와 야의 관계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이 상당히 많이 좀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함께하는 이런 특별위원회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 일자리 방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 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앞으로 더 강화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토의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정책이나 우리 사회가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너무나 아쉽고, 가능하시다면 위원장님, 일자리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 부문을 늘린다는 정책의 방향은 너무나 많은 재정적 부담을 소요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1만 정도의 국가공무원의 임금만으로도 우리 국가예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측면에서의 일자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는 정말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상충되는 여야 간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더 많은 토의와 논의 그리고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잡아서 일자리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건지 또 여야 간에 타협할 수 있는 점은 뭐가 있는지를 좀 더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도 다시 한번, 이번에 종료된다면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동영 이만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니다.

최운열 위원님, 자리로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 위원님.

○추경호 위원 앉으시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법안, 12개 법안 잘 정리가 돼 있어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최운열 소위원장님, 경륜과 실력을 바탕으로 좋은 법안들 많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의가 없고요. 한두 가지만 우려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해 주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서 은행이 창업자에 대해서 연대보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저는 기본정신 대찬성입니다.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정신은 좋은데 혹시 일부에서는 본인이 대출요건이 되지 않고 연대보증을 가져오면 은행이 쉽게 대출할 수도 있는데 은행이 이걸 금지함으로써 우리 앞으로 이걸 못 한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가져오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은행의 심사요건에는 충족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규정 때문에 당신한테 대출을 해 주기 어렵다, 오히려 걱정한 부분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아서 실제 선의의 사람이 보증을 끼고 가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고 창업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 길이 원초적으로 혹시 현장에서 이 조항 때문에 막혀지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그런 거는 유의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의 자택의 남은 방을 민박 제공하자 하는 취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 보면 또 숙박시설의 관점에서 보통 집에서 깔끔한 방 그냥 제공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 주거요건을 정해 놓으면 이런저런 시설기준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다른 규제가 창설됨으로써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따뜻한, 소위 말해서 인간미가 흐르는 남은 방 제공함으로써 민박이 활성화되는데 이 부분이 규제가 들어가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저런 거는 안 됩니다, 뭐 또 설치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근본취지가, 잘 되고자 하는 이 취지가 오히려 또 다른 아마 행정집행상의 규제 창설로 인해서 차단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은 꼭 유의해서 전달됐으면 좋겠다

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열 위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실무진에서 잘 검토해서 법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같으실 거예요.

일단 운영위원회 논의로 1기 미래일자리특위는 종료되지만 다시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논의를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데 동의가 되면 2기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당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도 당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방 백승주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또 윤종오 위원님,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마련된 법률 개정 또는 제정 사항에 좀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법 개정 사항 말고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보고서를 보내는 이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반영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임해 주시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하겠습니다.

오늘 12건의 법안 개정안을 포함해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등 필요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 30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됩니다.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 뒤에 15일 이내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께 위임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미래일자리특위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金成泰	김한정	박경미	박정
백승주	오세정	윤종오	이만희
이완영	이종배	정동영	최운열
추경호			

○청가 위원(2인)

송희경 서형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전문위원	조의섭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교섭단체	연월일
안철수	서울특별시 노원구병	국민의당	2017. 4. 17.

○의원 퇴직

의원명	교섭단체	사유	연월일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퇴직(탈당)	2017. 6. 20.